

## 1. 개정이유

자동차 재검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검사 부적합 항목 중 육안으로 적합여부 판단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 검사소 재방문 없는 온라인 재검사 제도가 시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3.11.26시행) 됨에 따른 검사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자동차 검사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 검사 내실화를 위한 체크 리스트 사용규정 신설(제14조7항)  
자동차검사 시 검사원이 자동차의 등록정보, 제원정보, 결함정보 및 검사항목 등이 포함된 서식의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제16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 신청기한 마련 및 재검사시 첨부할 첨부사진 기준 명확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검사처리 기준 마련 등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3조·제80조·81조·제86조·제87조”를 “제73조·제80조·제81조·제86조·제87조”로 한다.

제2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본문 중 “검사유효기간 기재”를 “기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는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정보, 제원정보, 결함정보 및 검사항목 등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동차검사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제1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 시행) ① 규칙 제81조제3항 또는 종합검사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재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검사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등록번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사진
2.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사진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당일 확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규칙 제81조제4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받은 신청인은 요청사항을 보완하고 재검사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사진의 크기, 형식 및 예시 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안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사 처리상태를 문자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고지할 수 있다.

제30조 중 “2019년”을 “2024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자동차검사 체크 리스트

유효기간 만료일 :

갱신유효기간 :

접수번호		구분		주행거리	km
차량번호		차명		전주행거리	km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최초등록일	
제원	차체	길이	실내(하대)	정원명	적재량 kg
		너비		연료	배기량 cc
		높이		튜닝내용:	
	차량중량(kg)		차량총중량(kg)		

검사항목			자동차등록증	엔진오일	
외부	내부				
동일성확인	승차장치	제동장치	타이어		 과다 적정 부족 과부족
제원측정	소화기	동력전달장치	앞	앞	
창유리	경음기	완충장치	뒤	뒤	
등화장치	계기장치	전기 및 전자장치	패드		
주행장치	하체		차체 및 차대	앞	앞
시야확보장치	원동기	내압용기	뒤	뒤	
기타	연료장치	가스발산 및 소음방지장치			
결합의심내용					
메 모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전조등 종류	할로겐	HID	LED	미인증	레벨링	기타				
등화장치 상태 (점등등색설치)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상		상	
	상향	상향	좌	우	전좌	전우	좌	좌측	우	우측
	하향	하향			후좌	후우	하		하	
	안개등		후미등		차폭등		번호등		기타 등화장치	
좌	우	좌	우	좌	우	좌	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80조·81조·제86조·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73조·제80조·제81조·제86조·제87조 ----- ----- ----- ----- ----- ----- ----- ----- ----- -----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 ----- ----- -----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 ----- ----- ----- -----
제14조(검사의 시행) ① ~ ③ 삭제 ④ ~ ⑤(생략)	제14조(검사의 시행)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는 규칙 제80조제4항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종합검사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한 후, 검사유효기간 기재 누락이나 명백한 주행거리 오기 등의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⑥ -----  
-----  
-----  
-----  
-----  
-----  
----- 기재사항 -----  
-----  
-----  
-----  
-----  
-----  
-----  
-----  
-----

⑦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는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정보, 제원정보, 결함정보 및 검사항목 등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동차검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 시행) ① 규칙 제81조제3항 또는 종합검사규칙 제

7조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검사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등록번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사진

2.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사진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당일 확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규칙 제81조제4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받은 신청인은 요청사항을 보완하고 재검사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사진의 크기, 형식 및 예시 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안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사 처리상태를 문자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고지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키한) -----2019년  
-----.

제30조(재검토키한) -----2024년  
-----.